

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

제정 2013.10.17.

제14차 개정 2020.08.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** 자격·임용·신분·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08.16., 2020.08.31.)

[규정명칭 변경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]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**교육중점교원이라 함은 교양이나 전공과목의 강의, 해당 분야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** 말하며, **강의전담교원이라 함은 강의만을 전담하는 계약제 전임교원을** 말한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제3조(임용자격)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임용자격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에 따른다.** (개정 2013.11.18., 2016.01.21., 2017.1.11., 2019.02.28., 2019.08.16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제4조(임용절차) ①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하며,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인사관리 준칙의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.** (개정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08.16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②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할 때는 별표1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.** (개정 2013.11.18.,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제5조(임용조건 및 기간) ① **교육중점교원의 직급은 최초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하고 6년이 경과한 후 심사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,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** (항 신설 2020.08.31.)

② **강의전담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.**(개정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12.30.)(항 변경 2020.08.31.)

③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 임용한다.** 단, 재계약심사는 해당년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며, 신규임용 시기로 인하여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. (개정 2013.11.18., 2017.1.1., 2018.03.22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 (항 변경 2020.08.31.)

④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** (개정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제6조(임기 만료 통보)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에게는**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**심사**를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서식과 함께 문서로 통지한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② 재계약 심사를 받고자 하는 **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**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

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임명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기간 내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제7조(재계약 심사방법) ①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3.11.18., 2014.07.30.,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1. 교육중점교원 : 강의평가 결과(학부기준 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강의평가 결과 제외)가 전임교원 중 상위 70퍼센트 이내이고,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이 100점 이상인 교원으로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(별표2)을 얻은 교원 (호 신설 2020.08.31.)

2. 강의전담교원 : 강의평가 결과(학부기준 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강의평가 결과 제외)가 전임교원 중 상위 60퍼센트 이내이고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(별표2)을 얻은 교원 (호 신설 2020.08.31.)

② 위 1항에서 학과의 추천은 학과 소속 일반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이 포함된 학과교수회의를 말하며, 단과대학의 추천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된 단과대학 학과장회의를 말한다. (항 신설 2020.08.31.)

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소속 학장의 의견서(별표4)를 참고하여 교육, 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등을 교육중점(강의전담)교원 재계약 심사 평정표(별표5)에 따라 평가하며, 별표5의 심사평정표는 교육중점(강의전담)교원 재계약 심사평정 기준표(별표6)를 적용하여 평가한다.(개정 2013.11.18., 2018.03.01., 2018.05.17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 9명이 별표5에 따라 각각 평정한 점수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심의를 진행하며, 재계약 대상자는 75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어야 한다. (개정 2018.03.01., 2019.02.28., 2020.08.31.)

⑤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를 작성한다.(개정 2018.03.01.)

⑥ 재계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신분보장) ①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(개정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②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제9조(복무) ① 교육중점교원의 연간 책임시수는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22시간으로 하고, 강의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(개정 2015.06.08.,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② 삭제 (2020.08.31.)

③ 삭제 (2013.11.18.)

④ 삭제 (2013.11.18.)

⑤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해외여행은 교원 해외여행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

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③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교원평가 및 제35조(휴직)와 교수연구년제는 적용 받지 않는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④ 교육중점교원은 교내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이 될 수 있으며 전체교수회의와 학과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, 강의전담교원은 교내연구 및 교수회의의 참여를 제한한다. (항 신설 2020.08.31.)

⑤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이 면직을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“사직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기 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⑥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“교직원 복무규정”에 따른다. (개정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(항 변경 2020.08.31.)

제10조(교육중점교원의로의 전환) 강의전담교원은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이 되는 때부터 심사를 거쳐 교육중점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. 교육중점교원 전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신설 2020.08.31.)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을 준용한다. (조 변경 2020.08.31.)

부칙(기획예산부-681, 2013.10.17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807, 2013.11.18)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527, 2014.07.30)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356, 2015.06.08)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605, 2015.11.06)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20, 2016.01.11)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56, 2016.01.21)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6, 2017.01.13)

이 규정은 2017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08, 2018.03.02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5조 제3항,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제1항의 보수, 재계약 심사방법, 재계약 적격심사 기준 점수 및 연간 책임시수는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 및 재계약 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54, 2018.03.22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5조 제2항의 계약임용기간의 변경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 및 재계약 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271, 2018.05.17.)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127, 2019.02.28.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변경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명칭은 이 규정에 따라 교육중점교원으로 변경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20, 2019.08.16.)

이 규정은 2019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641, 2019.12.30.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변경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육중점교원의 명칭은 이 규정에 따라 강의전담교원으로 변경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551, 2020.08.31.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10조(교육중점교원으로서의 전환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당시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은 재직기간 4년 이내라도 재계약 심사 시 교육중점교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<별표1> (개정 2013.11.18. 2015.06.08.,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 임용계약서

상지대학교 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과 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에 의한 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1. 임용기본사항

- 가. 직무구분 : 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
- 나. 직 위 : _____
- 다. 계약기간 : (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, 00일)
- 라. 임용부서 : (000대학 000학과(부))
- 마. 강의책임시간 : 연간 22시간(주당 12시간) (학부수업기준)

2. 처 우

- 가. “을”의 급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신규임용 시 1호봉부터 시작한다.
- 나. “을”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계약이 될 경우 이 기간을 경력에 포함 한다.

3. 복무조건

- 가. “을”은 학생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임용기간 중 교원으로서 기본적인 연구활동을 하여야(학생에 대한 강의만을 담당) 한다.
- 나.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상지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존중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,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

4. 재임용 계약

- 가.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임용 될 수 있다.
- 나. “갑”은 “을”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.
- 다. “을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심사를 “갑”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기간 내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.
- 라. 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“을”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

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한다.
마.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을”에 대한 학과(부)장 및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결정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.

- 1) 이 경우 “을”의 강의평가 결과(학부기준)는 전임교원 중 상위 70%이내이고, (강의전담교원의 경우 이하 해당없음)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을 적용한 연구실적이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2) “을”의 재계약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는 평정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한다.

바. 재계약 절차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.

5. 기 타

가. “을”이 관계 법령,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“갑”은 교원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나. “을”의 임용근거가 되는 각종 증명서 및 실적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“갑”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다. “을”이 면직을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“사직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기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.

라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마.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기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,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
20 . . .

“갑” 상지대학교총장 (직인)
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83(우산동)

“을” 성 명 : (인)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
<별표 2> (개정 2018.03.01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 재계약 추천서

재계약 대상 교원 인적사항						
소 속		직 급		성 명		
최초임용일	년 월 일	현 직 계약기간	~	년 월 일	년 월 일	
소속 학과(부)장 평가						
[강의, 교수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계약 추천 또는 제외에 대한 의견 기술]						
학과(부)장 _____ (인)						
소속 대학장의 의견서						
학 장 _____ (인)						

<별표 3호> 삭제 (2013.11.18.)

<별표 4> (개정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12.30., [2020.08.31.](#))

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 재계약 심사 의견서

대상자	소속 :	계약기간	학장 (인)
	직급 :		
	성명 :	. . 까지	
영역	구분	항목	의견
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		가.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격	
		나. 인간관계의 원만성	

<별표 5> (개정,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교육중점(강의전담) 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

평정대상자	소속	최초 임용일	
	성명	평정기간	
평정영역 (점수)	평정항목		배점
교육 (70)	① 수업개선실적	15	
	② 강의평가	15	
	③ 교수법개발 참여	10	
	④ 수업현황 및 담당시수	10	
	⑤ 휴·보강 관련 사항	10	
	⑥ 학사업무 준수	10	
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(30)	⑦ 교수로서의 자질	10	
	⑧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업적	10	
	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 및 재임용 시 발전계획	10	
합 계		100	
인사위원회 위원평가 의견			
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(인)			

<별표 5> (개정 2013.11.18., 2019.02.28., 2019.12.30., 2020.08.31.)

교육중점 (강의전담) 교원 재계약 심사평정 기준표

평정 항목	평정 기준					
① 수업개선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중 CQI보고서 제출과 강의개선 노력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CQI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					
	구 분	모두 준수	1회 미준수	2회 미준수	3회 미준수	4회 미준수
	점 수	5	4	3	2	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CQI보고서에 대한 학사관리 주무부서장(처장)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교육목표 달성도, 교육목표 달성 수준 미달학생 지도 방안 및 강의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 					
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점 수	10	8	6	4	2	
② 강의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 평균 강의평가 결과를 전임교원 전체 석차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 					
	구 분	상위 30% 이내	상위 40% 이내	상위 50% 이내	상위 60% 이내	상위 70% 이내
	점 수	15	12	9	6	3
③ 교수법개발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중 교내에서 개최된 교수법특강, 강의촬영컨설팅 및 교육혁신 워크숍 등 교수법 및 강의개선을 위한 각종 특강 또는 워크숍 등에 참석한 실적 					
	구 분	70%이상 참여	60% ~ 69% 참여	50% ~ 59% 참여	40% ~ 49% 참여	40%미만 참여
	점 수	10	8	6	4	2
<p>※ 대상 특강 또는 워크숍은 각 행정부서에서 교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체 교원에게 공지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, 참석여부 확인은 참석자서명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부로 증빙하고 서명부가 없는 경우 주관한 행정부서장의 참석확인서로 증빙함</p>						

평 정 항 목	평 정 기 준				
④ 수업현황 및 담당 시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중 학기별 평균 책임시수 및 학기 평균 주4일 수업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기별 평균 책임시수 				
	구 분	12시간 이상	9시간 ~ 11시간	6시간 ~ 8시간	6시간 미만
	점 수	5	4	3	2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 4일 수업 여부 				
구 분	4일 이상 수업	3.5 ~ 3.9일 수업	3.0 ~ 3.4 수업	3일 미만 수업	
점 수	5	5	3	2	
⑤ 휴·보강 관련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전체 학기 중 휴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업시간 반영 				
	구 분	전체 보강 실시	4시간 이하	5시간 ~ 8시간	9시간 이상
	점 수	10	8	6	4
⑥ 학사업무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용기간 중 수업계획서 제출, 성적처리 기한 및 성적 정정 인원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 				
	구 분	모든 학기 준수	1회	2회	3회 이상
	점 수	4	3	2	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성적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 				
	구 분	모든 학기 준수	1회	2회	3회 이상
	점 수	4	3	2	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성적 정정 인원 반영 점수 				
	구 분	8명 이내		9명 이상	
점 수	2		0		

평 정 항 목	평 정 기 준					
⑦ 교수로서의 자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속 학장의 심사의견서 및 추천서와 아래 상벌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교수의 강의, 교수능력 및 단과대학 내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인격에 대하여 인사위원이 평가함 					
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점 수	10	8	6	4	2
※ 참고사항 - 이사장, 총장 및 외부 공공기관장의 표창 -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학회 및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상을 수상한 경우 - 대학 내 수상 - 주의, 경고 및 징계 -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등						
⑧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업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임용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각종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제고한 업적을 토대로 인사위원이 평가함 					
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점 수	10	8	6	4	2
※ 학문적 업적은 재임용 신청 시 재임용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학문적 업적을 문서로 제출하고,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						
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 및 재임용 시 발전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임용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대내외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항 및 재임용 시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을 기초로 인사위원이 평가함 					
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점 수	10	8	6	4	2
※ 임용기간 학교기여도 및 재임용 시 발전계획은 재임용 신청 시 재임용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학교기여도 및 재임용 시 발전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고,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						